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7. 9. 12 (수) 10:30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권광택 의원외 6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3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3. 제안 이유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실·본부장 명칭을 변경(안 제4조)

나.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을 정비(안 제27조)

- (1)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도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조금에 대한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2조).

라.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함(안 제33조).

마. 시·군의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을 이전기업 및 도내 공장 증설 기업도 포함하기로 함(안 제34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2004년 11월 26일 제정된 후 2006년 12월 22일에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북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시 우리 도의 지원금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